

#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3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이종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  
김재진, 김춘곤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  
박성연, 서상열, 유만희,  
유정인, 이봉준, 이상욱,  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청년 발전 및 권익증진에 공헌한 청년에게 포상하는 사항에 대하여 「청년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 문제 해결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대상자에 청년을 추가함(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안 제3조제3항 신설).
- 나.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 종류, 방법 및 시기에 서울특별시청년상을 신설함(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6. 서울특별시청년상

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년상의 수상대상자는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나목 중 “청년 및 청소년지도분야”를 “청소년지도분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6. 서울특별시청년상 : 청년의 날(9월 세 번째 토요일)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	94	3	19	72
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	----

별표 1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서울특별시청년상	20	1	3	16
----------	----	---	---	----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시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서울 특별시시민상(이하 “상”이라 한다)의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6. ~ 10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3조(수상대상자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의 수상대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<u>청년분야 : 19세 이상 24세 이하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시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서울특별시청년상</u></p> <p><u>7. ~ 11. (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수상대상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년상의 수상대상자는 「서울특별시</u></p>

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.

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,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5.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 
가. (생략)  
나. 청년 및 청소년지도분야 :  
성년의 날(5월 셋째주 월요일)

<신설>

6. ~ 10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 
가. (현행과 같음)  
나. 청소년지도분야 -----  
-----  
-

6. 서울특별시청년상 : 청년의 날  
(9월 세 번째 토요일)
7. ~ 11. (현행 제6호부터 제10호  
까지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 
**시상종류별 시상인원**

(단위 : 명)

종류별	시상인원			
	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
계	252	13	67	172
서울특별시봉사상	21	1	5	15
서울특별시문화상	14	-	14	-
서울특별시환경상	21	1	5	15
서울특별시복지상	16	2	5	9

[별표 1]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 
**시상종류별 시상인원**

(단위 : 명)

종류별	시상인원			
	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
계	252	13	67	172
서울특별시봉사상	21	1	5	15
서울특별시문화상	14	-	14	-
서울특별시환경상	21	1	5	15
서울특별시복지상	16	2	5	9

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	114	4	22	88
서울특별시성평등상	6	1	2	3
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	6	1	2	3
서울특별시건축상	31	1	5	25
서울특별시건설상	16	1	5	10
서울특별시안전상	7	1	2	4

※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'대상' 선정 가능.

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	94	3	19	72
서울특별시청년상	20	1	3	16
서울특별시성평등상	6	1	2	3
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	6	1	2	3
서울특별시건축상	31	1	5	25
서울특별시건설상	16	1	5	10
서울특별시안전상	7	1	2	4

※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'대상' 선정 가능.

#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시상인원 증가 없이 정원내 조정을 통해 시상종류(서울특별시청년상)를 신설<sup>1)</sup>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」 [별표1] 시상종류별 시상인원

(단위 : 명)

종류별	시상인원			
	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
계	252	13	67	172
서울특별시봉사상	21	1	5	15
서울특별시문화상	14	-	14	-
서울특별시환경상	21	1	5	15
서울특별시복지상	16	2	5	9
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	114 (→94)	4 (→3)	22 (→19)	88 (→72)
서울특별시성평등상	6	1	2	3
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	6	1	2	3
서울특별시건축상	31	1	5	25
서울특별시건설상	16	1	5	10
서울특별시안전상	7	1	2	4
+				
서울특별시청년상	20	1	3	16